사랑해요! 중구

효!월드 효 문화 중심도시 중구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사랑해요!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기 획 공 보 실

사전 검토항목(Check List)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참고사항 등을 필요 시 기재)*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법규 검토	전결규정	◦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전결사항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구청장 결재, 부구청장 전결, 국장 전결 등	☑	☐	
	법적근거	◦ **법적 근거**(법령, 조례 등)**가 정확합니까?** 예) 정확한 법규 적용 확인, 개정된 법령명칭으로 수정 등	☑	☐	
	법적절차	◦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확인하였습니까?** 예)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청취, 청문, 고시·공고, 계약심사 등	☑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등 청렴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혜택, 강사수당의 적정성, 후원·협찬 규정 준수 등	☐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 수여, 기념품 및 경품 제공, 기부행위 등	☐	☑	
재원확보		◦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확보(본예산, 추경 등), 기금 활용 등	☐	☑	
홍보수단		◦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교육, SNS, 區 홈페이지, 주민안내 등	☐	☑	
현장의견		◦ **현장의견**(주민, 이해관계인 등) **수렴 방법을 마련하거나 현장의견을 반영 하였습니까?** 예) 의견수렴, 주민참여 방안,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안전		◦ **안전상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 **안전하게 과업을 완료하였습니까?**(결과보고 시) 예) 안전관리계획 수립,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보험가입 등	☐	☑	
협의사항		◦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하였습니까?** ◦ **협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까?**(결과보고 시) 예) (기획공보실) 조례·규칙 제·개정, 위원회 관리 등 (감 사 실)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교 통 과) 축제·행사 추진 시 교통통제 등 (여성가족과) 여성친화적 요소 부합 여부 등	☑	☐	
비공개 여부		◦ **공개·비공개에 대한 법적근거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 제8호	☑	☐	
수치 등 정확성		◦ **수치, 단위, 오탈자 등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통계수치, 기준일자, 금액단위, 연번 등	☑	☐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 배경 및 근거 ····· 1

Ⅱ. 2020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및 반성 ····· 2

Ⅲ.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목표 및 과제 ····· 3

Ⅳ. 2021년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 4

1. 적극행정 운영 체계 확립 ····· 4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8

3.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소극행정 혁파 ····· 11

Ⅴ. 행정사항 ····· 15

[참고 1] 적극행정 과제별 추진일정 ····· 16

[참고 2] 적극행정 ·소극행정 판단기준 ····· 17

2021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적극행정 추진배경 및 근거

1 추진배경

○ 행정환경 급변으로 인하여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불합리한 규제혁신 및 고충민원 등 행정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개개인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됨

2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19. 12. 16.)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점검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 기반 구축

Ⅱ 2020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및 반성

1 추진성과

○ 2020 대전 중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전파 / '20.3.24

○ 적극행정 총괄부서(기획공보실) 및 책임관(기획공보실장) 지정 운영

○ 적극행정 홍보 / 수시

- 중구 홈페이지 내「적극행정 코너」운영
- 적극행정 제도 안내(적극행정 유형 소개)
- 적극행정 우수 및 실천사례 게시 및 배포
- 적극행정 국민추천 창구 운영(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및 사례 추천)

○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및 홍보 : 신청 1건(자체 1건)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전파 / 수시

○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코로나19로 사이버 교육 실시)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 '20. 10. 16. ~ 10. 31.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 상반기

- 제5조 적극행정면책요건을 완화된 규정으로 개정
- 제9조 제4항 면책심사 신청 기한 삭제 등

○ 규제 개선 및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례・규칙 개정 등

-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원기준 완화) 등 8건

2 반성

○ 코로나19로 인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미흡

☞ 공정한 평가기준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공무원 선발을 통한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 실천 동기를 부여할 필요 있음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Ⅲ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목표 및 과제

목표	적극행정 문화 확립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

추진분야	3대 분야 11개 과제	소관부서
적극행정 운영체계 확립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운영	기획공보실 (기획담당)
	②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기획공보실 (기획담당)
	③ 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총무과 (인사교육담당)
	④ 적극행정 중점 과제 선정	기획공보실 (기획담당)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⑤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감사실 (감사담당)
	⑥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	감사실 (감사담당)
	⑦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지원 강화	기획공보실 (법무규제개혁담당)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소극행정 혁파	⑧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기획공보실 (기획담당) 총무과 (인사교육담당)
	⑨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기획공보실 (기획담당)
	⑩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획공보실 (기획담당)
	⑪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엄정 조치	감사실 (조사담당)

Ⅳ 2021년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1 적극행정 운영 체계 확립

1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운영

○ **(추진방향)** 인사, 교육, 감사, 혁신,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적극행정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총괄부서 및 책임관 : 기획공보실 기획공보실장
- 적극행정 추진과제별 협업부서 : 감사실, 총무과
- 적극행정 과제발굴 및 추진, 우수사례 제출 : 전부서

○ **(부서별 역할)**

총 괄

기획공보실장 (적극행정 책임관)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점검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법제 지원 ■ 적극행정 제도기반 마련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등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전 부 서

■ 적극행정 과제발굴 및 추진, 우수공무원 추천 및 우수사례 제출 등

○ **(향후계획)** 총괄부서와 협업부서 및 과제를 추진하는 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적극행정 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

2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 **(추진방향)**

-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효과적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공직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적극행정문화 정착·확산 지원
- 구체적인 이행점검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로 구성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활성화 및 실행계획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 모색

○ **(실행계획 수립)**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2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담은 「2021년 대전 중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이행실적 점검·관리)** 구체적인 이행점검 지표를 바탕으로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개선 실시

【이행점검지표 및 담당부서】

이행점검 지표	담당부서
▪ 적극행정 제도기반 마련 및 운영지원 실적	기획공보실(기획,법무규제개혁담당) 감사실(감사담당)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이행 실적	기획공보실(기획담당)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조치	기획공보실(기획담당), 총무과(인사교육담당)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운영 실적	감사실(감사담당)
▪ 소극행정 점검·조치, 신고센터, 처리현황	감사실(조사담당)

○ **(향후계획)**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 모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적극행정 실행방안의 개선 노력 병행

3 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 **(추진방향)**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체계(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의 추진사항 심의 및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합리성 도모

○ **(구　　성)**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가 대행하고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 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 시 **적극행정 책임관(기획공보실장)이 참여**하여 회의 지원

○ **(위원회 기능)** 적극행정 관련사항 심의・의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

▶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때 **자문을 요청한 사항**
(책임 회피 목적 상정 사항 제외)
▶ 사전컨설팅 요청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중구 **감사실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안**
▶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안

○ **(절　　차)**

심의요구	⇨	인사위원회 개최	⇨	심의·의결	⇨	의결사항 통보
적극행정 관련 안건심의 요청 (기획공보실→총무과)		인사위원회 소집 및 안건상정 (총무과)		적극행정 관련 안건 심의 (총무과 ·기획공보실)		심의결과 통보 (총무과→기획공보실)

○ **(향후계획)**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관련 사항 심의 / 4월 중
-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 심의 / 수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포상 심의 / 반기별

4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추진방향)**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중점과제 선정하고 추진 경과 및 성과 관리

* 추진근거 :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안부, 2021. 3.)

○ **(선정기준)**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

▶ 기존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혁신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선정과제) 석교동·태평1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

구분	내 용
추진배경	• 25년 이상된 노후 동청사의 안전성 강화 및 점차 다양해지는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부응과 공공편의 증진을 위한 다목적 공간 제공
추진내용	• 석교동,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 조성
추진이력	• 동 청사 신축에 따른 연차별 중기 투자계획 수립('19.4.) • 동 청사 신축부지 조사 및 신축 기본계획 수립('19.10.) • 사전행정절차이행/공유재산관리계획('19.12.), 市지방재정투자심사('20.3) •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예산 반영('20.10.) •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 및 특별교부세 등 국·시비 확보('20.9.)
문제점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지매입난항 및 소요예산 증가 우려 • 신축 위치 선정과 관련한 지역 주민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등
추진일정	• 1~2분기: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발주 • 3분기~ : 공사착공
기대효과	•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일상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1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개 념)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단, 공무원과 대상 업무의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감사원)
- 「대전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 (대 상)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 어려운 경우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외대상 〉

1.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 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처리절차)

사전 컨설팅 의뢰 (區 해당부서) ⇨ **사전컨설팅** (區 감사실) ⇨ **대전시 감사위원회 컨설팅 의뢰** (區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 **감사원 컨설팅 의뢰** (市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 (향후계획)

-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홍보 및 안내 (연중)

2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

○ (개 념) 공무원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4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
-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면책대상)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 경우 감사 면책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면책
-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 면책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감사 면책

○ (주요추진사항)

- 면책요건 완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처분 규정' 개정('20.6.30.)
- 감사 후 면책신청 기한 폐지
- 감사원 및 대전시 정기종합감사, 자체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 감사결과 징계요구 건은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검토 의무화
-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 운영(감사장)

○ (향후계획)

-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제도 홍보 및 안내(연중)
- 감사실시 계획 통보 시, 대상기관에 적극행정 면책 규정 안내

3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지원 강화

○ **(개　　념)** 적법하고 적극적인 공무수행 과정상 발생한 징계·소송 등에 대하여 법제 지원 및 관련 공무원 보호를 통해 공무원의 부담 경감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및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

○ **(대　　상)**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뢰, 형사피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중구청 소속 공무원

○ **(지원내용)**

-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소송대리 선임 등 지원

  *** 소송비용 지원(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결정) / 550만원 이내**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연계를 통한 지원

- **(조사단계 지원)** 기소 전 조사 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법률적 지원은 고문변호사, 임기제 공무원(변호사)을 활용하며 단,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확정 될 경우 소송비용 반납

> **※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용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법원 확정 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은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절차 이행
- 소관부서에서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 입안·정비 시 적극 지원

3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소극행정 혁파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방향)** 적극행정 추진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마인드 확산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 제14조)
-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

○ **(주요내용)**

- (선발시기) 연 2회(반기별) **※ 별도 계획 수립 · 시행**
- (선정기준)
  - 관행 혁신, 협업 조정, 규제애로 해소,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 공무원 뿐 아니라 공무직, 비정규직 지원 등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으로 확대함

- (절 차)

후보자 추천	▶	실무심사	▶	선 발	▶	결과공개 및 확산
· 부서 추천 · 주민 추천		· 사전검증 · 후보자선정		· 인사위원회 심의 (적극행정위원회)		· 내·외부 공개 사례 공유/확산

○ **(인센티브 안)** 대상자 희망 고려, 인센티브 유형 중 1개 부여 (원칙)

유 형	내 용
• 특별승진	▸ (5급이하) 공무원 한 계급 승진 임용
• 특별승급	▸ (6급이하 호봉제 공무원) 1호봉 승급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성과상여금(6급상당 이하) 또는 성과연봉 (5급상당 이상 및 연봉지급 대상자) 최고등급 부여
• 가점부여	▸ (5급이하) 승진후보자 평정시 최대 0.5점 가점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우선 선발
• 포상휴가	▸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 해외연수	▸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우선 선발

※ 인센티브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및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근거

2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 **(추진방향)**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 및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기여

○ **(주요내용)** 직장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시, 상시교육체계 운영

- 적극행정의 이해와 사례 전파를 위한 **직장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행정안전부),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인사처), 찾아가는 법제가이드라인 교육(법제처), 적극행정 지원제도 및 주요 사례 교육(감사원) 등 중앙 부처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 및 대전시 적극행정 강사풀(pool)과 연계하여 추진

- 나라배움터 '적극행정의 이해' 등 **사이버과정 이수 독려**

- 적극행정 공직자 마인드 고취를 위해 혁신월보 등을 활용하여 우수사례 등 전파

■ 적극행정 홍보 활성화

○ **(적극행정 홍보 창구 운영)**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인식제고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구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운영

- 적극행정 제도 , 우수사례 등 적극행정 홍보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주민 추천 코너 운영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DB 신설 / 행안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연동

○ **(상시홍보)** 보도자료 및 미디어 등 활용하여 적극행정 홍보 추진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공무원 선발, 직장교육 등 적극행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3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추진방향)**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내부 공감대 확보 및 동참 촉구를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추진

○ **(우수사례 발굴)**

-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와 연계한 적극적 사례 발굴
-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시 발굴·전파
-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련 카드뉴스·리플릿·포스터·우수사례집 제작
- 타 지자체 우수사례 수시 공유

○ **(확　산)**

-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교육 실시
-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 직원 공유 / 새올게시판에 지속 게시
- 구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홍보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언론보도
-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온라인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직장 내 적극행정 사례 전파 및 공무원의 적극행정 독려

○ **(향후계획)**

- 확대간부회의 및 동장회의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실시
-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시 발굴·제출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굴·제출
- 시민체감도 높은 적극행정·규제혁신 사례 공유

4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엄정 조치

○ **(개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 **(유형 및 정의)**

유형	정 의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및 제19조)

○ **(주요내용)**

- 공직기강 감찰 시 소극행정 분야 점검

  · 적극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가로막는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소극적 업무행태

-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적발 시 엄중문책

- 다양한 소극행정 사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소극행정 근절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공직기강 감찰계획 수립 시 통상의 복무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업무행태 포함 점검

v 행정사항

○ 전 부서

- 전 직원은 업무처리 시 적극행정 추진 및 소극행정 혁파
- 적극행정 관련 각종 제도 등 적극 활용

○ 기획공보실 및 총무과, 감사실

- 추진부서별 주요과제 수행시 적극 협조
- 분기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점검 시 실적 제출. 끝.

참고 1 적극행정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내용	소관부서	일정	비고
1. 적극행정 운영 체계 확립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운영	기획공보실	'21. 4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기획공보실	'21. 4월~	
▪ 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총 무 과	계속	
▪ 적극행정 중점 과제 선정	기획공보실	'21. 4월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감 사 실	계속	
▪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	감 사 실	계속	
▪ 적극행정 공무원 법제 지원 강화	기획공보실	계속	
3. 적극행정 문화정착 및 소극행정 혁파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기획공보실 총 무 과	6월,12월	
▪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기획공보실	계속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기획공보실	계속	
▪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엄정 조치	감 사 실	계속	

참고 2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정의

1 적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관련 규정 >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또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2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복지 부동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판단기준<예시>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넘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